

남양주시 공고 제2021-786 호

「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7일

남 양 주 시 장

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, 사업의 기획·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,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,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민간전문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- 다. 민간전문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, 업무원칙 등을 규정함(안 제7조 ~ 제9조)

3. 제정 조례안 : 별첨

4. 의견 제출

「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[참조: 남양주시청 전략기획관, 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(금곡동, 남양주시제1청사), 전자메일 : ddkminam@korea.kr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전략기획관 전략기획팀(☎031-590-832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(안)」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건축기본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건축”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중 보육시설·의료시설·복지시설·문화시설·체육시설·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사업을 말한다.
2. “민간전문가”란 「건축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.
3. “총괄건축가”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·조정 등 건축·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.
4. “공공건축가”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.

제3조(민간전문가의 구성) ① 시장은 「건축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

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괄건축가 1명,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,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④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민간전문가의 운영) 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총괄·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③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)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남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공공건축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
- 2.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, 발주 및 설계에 관한 총괄·조정 및 자문
- 3.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

4. 그 밖에 건축·도시·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·자문

제6조(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)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, 발주 및 설계에 대한 조정·자문
- 2. 그 밖에 건축·도시·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

제7조(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)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

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일체의 업무(입찰, 현상공모, 용역 수행 등)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(민간전문가의 해촉)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9조(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)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,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관·과		전략기획관
입안자	관·과장 직위·성명	과 장 문 흥 기
	팀장 직위·성명	전략기획팀장 업 우 원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동 근 (031-590-8320)

■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민간전문가 청렴서약서(제3조 관련)

본인은 남양주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남양주시 민간전문가로서 참여하는 조정·자문 등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 전문가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2. 본인은 남양주시 민간전문가로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며, 이해관계인과 부당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.
3. 본인은 남양주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동안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법인 자격으로 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입찰, 현상공모 및 용역수행 등 일체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.

년 월 일

서 약 자 성 명 : (서명)
총괄(공공)건축가

남 양 주 시 장 귀 하

총괄·공공건축가 자문 신청서

사 업 명			
사업위치			
사업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축 <input type="checkbox"/> 증축 <input type="checkbox"/> 개·재축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수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총사업비			
설계비		사업규모	
사업기간		주용도	
사업개요			
자문(조정) 받을 내용			

붙임 : 사업추진사항 파악이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 1부.

년 월 일

「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기 사업기획
(안)에 대하여 남양주시 총괄·공공건축가의 조정 및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.

제출부서	○○○ (실·국) ○○○과 ○○○과장 ○○○ 0000 ○○팀장 ○○○ 0000 담당 ○○○ 0000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